

廢棄物管理法

法律 第4,363號 ('91. 3. 8 公布)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법은 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하고, 廢棄物의 再活用을 촉진함으로써 環境保全과 國民生活의 質的向上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廢棄物”이라 함은 쓰레기, 燃燒滓, 汚泥, 廢油, 廢酸, 廢 알카리, 動物의 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物質을 말한다.
2. “一般廢棄物”이라 함은 特定廢棄物의 廢棄物을 말한다.
3. “特定廢棄物”이라 함은 事業活動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汚泥, 廢油, 廢酸, 廢 알카리, 廢고무, 廢合成樹脂 등 環境 및 國民保健에 有害한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質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廢棄物의 燃却, 中和, 破碎, 固形化 등에 의한 中間處理와 埋立, 海域排出 등에 의한 最終處理를 말한다.
5. “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一般廢棄物處理施設과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말한다.
6.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燃却,

破碎, 埋立 등의 방법에 의하여 一般廢棄物을 安全하게 처리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7.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燃却, 破碎, 中和, 固形化, 埋立 등의 방법에 의하여 特定廢棄物을 安全하게 처리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8. “再活用”이라 함은 廢棄物을 再生하거나 再利用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適用範圍) ①이 법은 原子方法에 의한 放射性物質 및 이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과 醫療法에 의한 摘出物 등과 汚水, 糞尿 및 畜產廢水의 처리에 관한 法律에 의한 汚水, 糞尿 및 畜產廢水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에 의한 廢棄物의 처리에 있어서 海域排出에 관하여는 海洋污染防治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4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市長, 郡守, 區聽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聽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여 이를 유지, 管理하여야 하며, 一般廢棄物의 收集, 運搬,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資質向上으로 一般廢棄物處理事業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住民의 清掃

意識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서울特別市長, 直轄市長, 道知事(이하 “市, 道知事”라 한다)는 市長, 郡守, 區聽長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技術的, 財政的 지원을 하고, 그 管轄區域안의 一般廢棄物 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

③國家는 特定廢棄物의 排出 및 處理狀況을 파악하고, 特定廢棄物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廢棄物處理에 관한 技術을 研究, 開發, 지원하고, 市·道知事 및 市長, 郡守, 區聽長에 대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技術的, 財政的 지원을 하며, 서울特別市, 直轄市, 道(이하 “市·道”라 한다)간의 一般廢棄物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

第5條(一般廢棄物의 廣域管理)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2이상의 市·郡·區에서 발생하는 一般廢棄物을 廣域的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廣域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공동으로 設置, 운영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域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운영을 總理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6條(國民의 責務) ①모든 國民은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유지하고, 廢棄物의 減量化 및 資源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土地, 建物의 所有者, 占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가 所有, 占有 또는 管理하고 있는 土地, 建物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市長, 郡守, 區聽長이 정하는 計劃에 따라 大清掃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第7條에 規定된 地域 또는 施設을 管理하고 있는 者는 당해 地域 또는 施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7條(廢棄物의 投棄禁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文化遺跡地, 公園, 廣場, 野營場,

海水浴場, 道路, 港灣, 漁港, 下水道, 河川, 湖沼, 山林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또는 施設에 廢棄物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第8條(廢棄物處理基本計劃) ①市·道知事는 環境處長官이 정하는 指針에 따라 管轄區域 안의 一般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環境處長官은 基本計劃을 승인 또는 變更承認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市長, 郡守, 區聽長은 管轄區域안의 一般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의 一般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과 特定廢棄物의 發生量, 發生地域 및 處理施設設置의 妥當性 檢討資料 등을 基礎로 하여 國家의 廢棄物處理에 관한 綜合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9條(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決定·告示)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8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管理에 관한 綜合計劃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位置, 規模, 面積, 設置時期, 事業施行者 등을 명시한 廢棄物處理施設設計劃을 決定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官報 또는 市·道公報에 告示하고, 그 圖面을 누구든지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條(土地 등의 收用· 사용) ①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廐棄物處理施設 設置計劃에 따라 廐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土地·建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물건이나 土地, 建物 또는 물건에 관한 所有權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適用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收用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廢棄物處理施設 設置計劃의 決定 또는 變更은 同法. 第 1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보며, 裁決申請은 同法 第 17條 및 同法 第 25條 第 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廢棄物處理施設 設置計劃의 決定 또는 變更을 한 날부터 2年 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 11條(廢棄物公定試驗方法) 環境處長官은 廢棄物로 인한 危害性의 判斷 및 廢棄物의 처리방법의 決定에 필요한 基礎資料가 되는 廢棄物의 性狀 및 污染物質의 溶出 등을 分析함에 있어서 그 分析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廢棄物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 2 章 廢棄物의 收集 · 運搬 · 치리

第 1 節 一般廢棄物

第 12條(一般廢棄物管理區域) 全國을 一般廢棄物管理區域으로 한다. 다만,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 郡守, 區聽長이 지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

第 13條(一般廢棄物의 치리 등) ①市長, 郡守, 區聽長은 一般廢棄物管理區域 안에서 排出되는 一般廢棄物을 收集, 運搬, 치리하여야 한다.

②市長, 郡守, 區聽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 17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 處理業者로 하여금 第 1項의 規定에 의한 收集, 運搬 또는 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市長, 郡守, 區聽長은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 및 方법에 따라 一般廢棄物을 收集, 運搬, 치리하여야 한다. 第 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處理業者가 그 業務를 代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市長, 郡守, 區聽長은 一般廢棄物을 收集,

運搬, 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 14條(多量排出 一般廢棄物의 치리 등) ① 事業活動에 수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量 이상의 一般廢棄物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多量排出者”라 한다)는 市長, 郡守, 區聽長에게 당해 廢棄物의 종류, 發生量 등을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申告하여야 한다.

②多量排出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廢棄物을 收集, 運搬, 치리하여야 한다.

第 15條(一般廢棄物 排出者의 處理協助 등)

①一般廢棄物 管理區域안에 있는 一般廢棄物이 排出되는 土地, 建物의 所有者, 占有者 또는 管理者(이하 “一般廢棄物 排出者”라 한다)는 그 土地 또는 建物에서 排出되는 一般廢棄物 중 燒却, 埋立 등 生活環境保全상 지장이 없는 方法으로 용이하게 치리할 수 있는 一般廢棄物은 이를 스스로 치리하여야 한다.

②一般廢棄物排出者は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 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스스로 치리할 수 없는 一般廢棄物을 종류, 性狀別로 分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第 16條(一般廢棄物 保管施設 등의 設置) ① 市長, 郡守, 區聽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一般廢棄物排出者로 하여금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一般廢棄物 保管施設 또는 容器를 設置하게 할 수 있다.

②市長, 郡守, 區聽長은 一般廢棄物 排出者가 設置하는 保管施設 또는 容器가 第 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정하여 一般廢棄物 排出者에게 그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 17條(一般廢棄物處理業) ①一般廢棄物의 收集, 運搬 또는 치리를 業(이하 “一般廢棄物 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裝備, 技術能力 등 요건을 갖추어 業種別로 市·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中 總理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一般廢棄物 處理業의 業種區分과 營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1. 一般廢棄物 收集, 運搬業

一般廢棄物을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營業

2. 一般廢棄物 中間處理業

一般廢棄物 處理施設을 갖추고 一般廢棄物을 燃却, 破碎 등의 方法에 의하여 中間處理하는 營業

3. 一般廢棄物 最終處理業

一般廢棄物 處理施設을 갖추고 一般廢棄物을 埋立, 海域排出 등의 方法에 의하여 最終處理하는 營業

③市·道知事은 第 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그 營業區域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第 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一般廢棄物 處理業者”라 한다)는 당해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基準을 초과하여 料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第 18 條(缺格事由)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一般廢棄物 處理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1. 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2. 破產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一般廢棄物 處理業의 許可가 取消된 者로서 그 許可가 取消된 날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任員 중에 第 1號 내지 第 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 19 條(許可의 取消 등) ①市·道知事은 一般廢棄物 處理業者가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 이

내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 1號 또는 第 2號에 해당할 때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第 18條 第 1號 내지 第 3號 또는 第 5號에 해당된 때

2. 詐偽 기타 부정한 方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3. 許可를 받은 후 1年 이내에 營業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年 이상 休業한 때

4. 第 17條 第 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市·道知事은 一般廢棄物 處理業者가 第 18條 第 5號에 해당하는 사유로 許可를 取消하고자 할 때에는 任員改任에 필요한 期間을 6月 이상 주어야 한다.

第 20 條(一般廢棄物 處理施設의 設置 및 管理)

①一般廢棄物 處理施設은 總理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②一般廢棄物 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第 17條 第 1項 및 第 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 處理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및 許可를 받은 者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사항中 總理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一般廢棄物 處理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그 設置工事を 완료한 후 당해 施設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一般廢棄物 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또는 그 管理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管理基準에 따라 그 施設을 유지, 管理하여야 한다.

⑤環境處長官은 一般廢棄物 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유지, 管理가 第 1項 또는 第 4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 또는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設置한 者 또는 그 管理者에게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의 개선을 命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당해 施設의 사용정지를 命할 수 있다.

⑥環境處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과 使用停止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第21條(一般廢棄物 處理施設의 設計, 施工業)

①一般廢棄物 處理施設의 設計, 施工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 施工业의 登錄을 한 者(이하 “設計, 施工业者”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設計, 施工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 設計, 施工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事業場을 경영하는 者가 자기의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一般廢棄物을 처리하기 위하여 一般廢棄物 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2. 廢棄物處理에 관한 研究를 目的으로 하는 경우

3. 기타 總理令이 정하는 경우

②第1項 但書의 경우 環境處長官은 總理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를 施工監理者로 지정할 수 있다.

③一般廢棄物 處理施設의 設計, 施工业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 裝備, 技術能力 등 요건을 갖추어 環境處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은 總理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第18條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 施工业의 登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2條(登錄의 取消 등) ①環境處長官은 一般廢棄物 處理施設의 設計, 施工业者가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할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21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8條 第1號 내지 第3號 또는 第5號에 해당된 때
 2. 詐偽 기타 부정한 方法으로 登錄을 한 것이 判明된 때
 3. 登錄을 한 후 1年 이내에 營業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年 이상 休業한 때
 4. 第21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5.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때
 6. 設計, 施工业者가 그 設計, 施工을 不實하게 하거나 都給받은 工事를 一括하여 下都給한 때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②第19條 第2項의 規定은 第1項 第1號에 의한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의 정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3條(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된 設計, 施工业者の 繼續工事) ①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의 處分을 받은 者는 그 處分 전에 체결한 契約分에 한하여 당해 工事의 設計, 施工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處長官은 總理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를 施工監理者로 지정하여 工事を 監理, 監督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施工을 하는 者는 당해 施設의 設計, 施工을 완료할 때까지는 이 法에 의한 設計, 施工业者로 본다.

第2節 特定廢棄物

第24條(特定廢棄物排出者の 義務 등) ①特定廢棄物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特定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事業活動에 따라 발생하는 特定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生產工程에 있어서는 技術開發 및 再活用 등의 方法으로 特定廢棄物의 발생을 최대한

으로 抑制하여야 한다.

- ②特定廢棄物排出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③特定廢棄物排出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비치하고 特定廢棄物의 發生量, 再活用狀況, 處理實績 등을 記錄하되, 그 保存期間은 最終記載를 한 날부터 5年으로 한다.

第 25 條(特定廢棄物의 처리) ①特定廢棄物排出者는 그의 事業場에서 發生하는 特定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第 26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特定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 第 31 條의 規定에 의하여 再活用目的으로 다른 사람의 特定廢棄物을 처리하는 者 또는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 運영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國家 또는 總理令이 정하는 者는 特定廢棄物의 廣域處理를 위한 施設(이하 “公共處理施設”이라 한다)을 設置, 運영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共處理施設을 設置, 運영하는 者는 第 26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處理施設에 委託處理에 관한 手數料 기타 委託處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④特定廢棄物排出者는 一般廢棄物과 特定廢棄物을 分離하여 보관하고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 및 方법에 따라 特定廢棄物을 收集, 運搬, 처리하여야 한다. 第 1 項 또는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廢棄物處理業者 등이 그 業務를 委託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環境處長官은 特定廢棄物을 처리하는 者가 特定廢棄物을 처리함에 있어 第 4 項의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收集, 運搬 또는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정하여 당해 特定廢棄物을 처리하는 者에게 收集, 運搬 또는 처리방법의 變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 26 條(特定廢棄物處理業) ①特定廢棄物의 收集, 運搬 또는 처리를 業(이하 “特定廢棄

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 裝備, 技術能力 등 요건을 갖추어 業種別로 環境處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中 總理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特定廢棄物處理業의 業種區分과 營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1. 特定廢棄物 收集, 運搬業

特定廢棄物을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營業

2. 特定廢棄物 中間處理業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갖추고 特定廢棄物을 燃却, 中和, 破碎, 固形化 등의 方法에 의하여 中間處理하는 營業

3. 特定廢棄物 最終處理業

特定廢棄物 處理施設을 갖추고 特定廢棄物을 埋立, 海域排出 등의 方法에 의하여 最終處理하는 營業

③環境處長官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그 營業區域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環境處長官은 特定廢棄物의 發生量과 特定廢棄物處理業者의 地域의 分布 등을 고려하여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⑤第 18 條 및 第 19 條의 規定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와 許可의 取消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 27 條(特定廢棄物의 運搬, 處理申告) 特定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에게 그 運搬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申告하여야 한다.

第 28 條(特定廢棄物 處理施設의 設置 및 管理)

①特定廢棄物 處理施設은 總理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②特定廢棄物 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第 26 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廢棄物 處理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및 許可를 받은 者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中 總理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特定廢棄物 處理施設의 設置者는 그 設置工事を 완료한 후 당해 施設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特定廢棄物 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또는 그 管理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管理基準에 따라 그 施設을 유지, 管理하여야 한다.

⑤環境處長官은 特定廢棄物 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유지, 管理가 第 1項 또는 第 4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 또는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設置한 者 또는 그 管理者에게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의 개선을 命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당해 施設의 사용정지를 命할 수 있다.

⑥環境處長官은 第 5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과 使用停止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第 3 章 廢棄物의 發生抑制 및 再活用 등

第 29 條(廢棄物의 減量化) 廢棄物을 排出하는 者는 廢棄物의 發生量 減少를 위하여 廢棄物의 再活用 및 製品製造方法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 30 條(國家 등의 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廢棄物의 發生量 減少와 再活用을 촉진하기 위한 施設의 設置 및 再活用製品의 優先購買 등 財政的, 技術的 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 31 條(廢棄物의 再活用 申告 등) ①廢棄物을 原料, 材料, 燃料 등으로 再活用(再活用을 目的으로 하는 收集, 運搬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者 중 一般廢棄物을 再活用하고자 하는 者는 市·道知事에게, 特定廢棄物을 再活用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자 하는 者는 環境處長官에게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再活用 對象品目 및 方法 등을 각각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 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 중 總理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再活用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施設, 裝備, 技術能力 등을 갖추어야 한다.

第 32 條(廢棄物의 回收措置) ①事業者는 製品의 製造, 加工, 輸入, 販賣 등을 함에 있어서 그 製造, 加工, 輸入, 販賣 등에 사용되는 材料, 容器나 製品 등이 廢棄物로 되는 경우 그 回收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 1項의 規定에 의한 製品, 材料, 容器 등이 大氣環境保全法 第 2條, 水質環境保全法 第 2條 또는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 2條의 規定에 의한 大氣污染物質, 水質污染物質, 特定大氣有害物質, 特定水質有害物質 또는 有毒物, 特定有毒物 중 總理令에서 정하는 物質을 함유하고 있거나 多量으로 製造, 加工, 輸入, 販賣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製品, 材料, 容器 등이 廢棄物이 되는 경우 그 回收 및 적정한 처리방법을 告示하고, 그 製品, 材料, 容器 등의 製造, 加工, 輸入, 販賣業者에게 그 回收 및 적정한 처리 등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道知事が 告示를 하거나 措置命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 33 條(廢棄物의 回收·處理費用의 預置 등)

①環境處長官은 第 32條 第 2項의 規定에 의한 製品, 容器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品, 容器가 廢棄物이 되는 경우 그 回收, 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당해 製品, 容器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로 하여금 第 34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管理基金에 매년 預置하게 할 수 있다. 다만, 事業者團體가 自體基金을造成하여 廢棄物을 回收,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回收, 처리의 범위안에서 第 34條의 規定에 의한 廉價廢棄物管理基金에 回收, 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預置하지 아니한다.

②第 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が預置하여야 할回收, 처리에 소요되는費用(이하 “預置金”이라 한다)은大統領令이 정하는基準에 의하여算出하되, 그納付時期, 節次 기타 필요한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環境處長官은製造業者 또는輸入業者が製品, 容器의回收, 처리를 위한第32條 第2項의規定에 의한措置命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預置金 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大統領令이 정하는基準에 의하여算出된금액에 해당하는預置金을 반환하되, 그返還時期, 節次 기타 필요한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경우반환하여야 할금액이 납부된預置金額보다 많은 때에는 그差額은廢棄物管理基金의 부담으로 한다.

④環境處長官은年度末에預置金을精算함에 있어서第1項但書의規定에 의한事業者團體가 실제回收, 처리하지 아니한廢棄物의回收, 처리에 소요되는費用이 이미 납부한預置金보다 많을 때에는 그差額을徵收하되, 그納付時期, 節次 기타 필요한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第1項 또는第4項의規定에 의한預置金 또는差額을納付期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徵收한다.

第34條(廢棄物管理基金)廢棄物의再活用 및 적정한처리에필요한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廢棄物管理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設置한다.

第35條(基金의造成)基金은 다음各號의財源으로造成한다.

1. 第33條 第1項의規定에 의한預置金
2. 第38條의規定에 의한借入金
3. 第48條의規定에 의한事後管理預置金
4. 第49條의規定에 의한埋立地事後管理를 위한積立金
5. 基金의通用으로생기는收益金
6. 기타大統領令이정하는者의出損金 및大統領令이정하는收入金

第36條(基金의用途)基金은 다음各號의

用途에 이를 사용한다.

1. 再活用廢棄物의購入 및備蓄
2. 預置金의還拂
3. 埋立地事後管理의代行
4. 廢棄物再活用施設의設置 및再活用技術의개발
5. 기타大統領令이정하는用途

第37條(基金의運用·管理)①基金은環境處長官이運用, 管理한다.

②環境處長官은基金의運用·管理에관한事務를合成樹脂廢棄物處理事業法에의한韓國資源再生公社에委託할수있다.

③基金의運用計劃 및決算등에관하여는豫算會計法第7條의規定을準用한다.

第38條(基金의借入)環境處長官은基金의運用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基金의부담으로金融機關이나 다른基金으로부터長期借入 또는一時借入을 할수있다.

第4章 廢棄物處理業者 등에 대한指導·監督등

第39條(技術管理人)①大統領令이정하는廢棄物處理施設을設置·운영하는者는당해施設의유지·management에관한技術業務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技術管理人을두어야한다. 다만, 스스로技術management를하는경우와技術managementability이있다고大統領令이정하는者와技術management代行契約을체결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第1項의規定에의한技術management의資格, 준수사항 및技術management代行契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總理令으로정한다.

第40條(廢棄物處理擔當者등에대한教育)

①環境處長官은大統領令이정하는廢棄物處理擔當者등에대하여그資質向上을위하여필요한education을실시할수있다.

②第1項의規定에의한education의실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總理令으로정한다.

第41條(帳簿의記錄·보존)다음各號의1에해당하는者는總理令이정하는바에따라

帳簿를 비치하고, 廢棄物의收集, 運搬, 處理狀況 등(第7號에 해당하는者의 경우에는製品, 容器 등의 生產, 輸入 및 販賣量과回收 및 處理量 등)을 記錄하되, 그 保存期間은 最終記載를 한 날부터 5年으로 한다.

1.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業者
2. 第2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 管理하는者
3. 第2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處理施設을 設置, 운영하는者
4.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廢棄物處理業者
5. 第2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 管理하는者
6. 第3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者
7. 第32條 第2項 및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

第42條(休業, 廢業 등의 申告)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業者, 第21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 施工業者 또는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廢棄物處理業者는 그 營業을 休業, 廢業 또는 再開業한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許可 또는 登錄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43條(보고, 檢查 등) ①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 郡守, 區廳長은 이 法의施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 또는 事業場 등에出入하여 關係書類나 施設, 裝備 등을 檢查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 檢查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5章 補則

第44條(廢棄物의 輸入制限) 環境處長官은 環

境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廢棄物의 輸入을 제한하여 줄 것을 商工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第45條(廢棄物處理에 대한 措置命令) ①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生活環境保全상 중대한 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당해 廢棄物의 처리를 한者 또는 당해 廢棄物의 처리를 委託한者에 대하여 그 危害의 제거 또는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1. 一般廢棄物處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一般廢棄物을 처리한 경우
2. 特定廢棄物處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特定廢棄物을 처리한 경우

②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命令을 받을者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辯明 및 有利한 證據를 제출할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生活環境保全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6條(代執行)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廢棄物의 처리를 한者 또는 그 처리를 委託한者가 第4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廢棄物의 처리를 한者 또는 그 처리를 委託한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第47條(廢棄物處理施設의 事後管理 등) ①第20條 第2項 및 第2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承認을 얻은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者(第17條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處理業 및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者를 포함한다)는 그가 設置한 廢棄物處理施設의 사용을 종료하거나閉鎖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者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埋立하는 施設을 사용종료 또는 閉鎖한者에 대하여 당해 施設의 사용종료 또는 閉鎖 후

住民의 건강 또는 財產이나 周邊環境의 被害防止를 위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浸出水處理施設의 稼動 등 事後管理에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③環境處長官은 第 48條의 規定에 의한 預置費用을 납부한 者, 事後管理의 이행을 保證하는 保險에 加入한 者 또는 第 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後管理預置金을 事前積立한 者가 事後management業務를 적합하지 아니하게 행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이의 是正을 命할 수 있으며, 그 期間내에 이를 是正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 그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事後management에 소요되는 費用은 납부된 預置費用, 履行保證保險金 또는 預置費用의 事前積立金으로 충당한다.

第 48 條(廢棄物處理施設의 事後管理預置金)

①環境處長官은 第 47條 第 2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management對象인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이 그 사용종료 또는 閉鎖 후 浸出水의 漏出 등으로 인하여 住民의 건강 또는 財產이나 周邊環境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当해 施設을 設置한 者로 하여금 그 事後management의 이행을 保證하게 하기 위하여 事後management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基金에 預置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後management에 소요되는 費用의 預置를 면제하거나 事後management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預置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事後management의 이행을 保證하는 保險에 加入한 경우

2. 第 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後management에 소요되는 費用을 事前積立한 경우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第 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한 者가 預置하여야 할 費用(이하 “事後management預置金”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算出하되, 그 納付時期,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

令으로 정한다.

③第 2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management預置金을 納付期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④環境處長官은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한 者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事後management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 事後management預置金 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算出된 금액에 해당하는 事後management預置金을 반환하여야 한다.

第 49 條(事後management預置金의 事前積立) ①環境處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当해 施設의 사용종료 또는 閉鎖 후의 事後management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基金에 事前積立하게 할 수 있다.

②環境處長官은 第 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設置한 者가 事前積立한 금액이 第 48條 第 1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management預置金보다 많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差額을 반환하여야 한다.

第 50 條(사용종료 또는 閉鎖 후의 土地利用制限 등) ①環境處長官은 第 48條 第 1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management對象인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이 사용종료되거나 閉鎖된 후 浸出water의 漏出, 堤防의 遺失 등으로 인하여 住民의 건강 또는 財產이나 周邊environment에 중대한 危害를 거쳐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当해 施設이 所在한 土地의 所有權 또는 所有權 외의 權利를 가지고 있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동안 그 土地utilization을 公園, 樹木의 植栽, 草地의 造成 및 體育施設의 設置에 限定하도록 그 用途를 제한할 수 있다.

②環境處長官은 第 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utilization制限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 基金에서 정당한 补償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環境處長官은 損失補償을 받을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第 51 條(廢棄物處理事業의 調整)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 4 條 第 2 項 또는 第 4 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간의 廢棄物處理事業의 調整을 함에 있어서 廢棄物埋立施設 등 廢棄物處理施設을 共同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共同으로 사용하게 하고, 당해 施設이 設置된 地域의 生活環境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支援對策을 강구하도록 관련 地方自治團體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地方自治團體는 特別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 52 條(國庫補助) 國家는豫算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號의 구분에 따라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1. 地方自治團體의 경우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費用
2. 公共處理施設을 設置, 운영하는 者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費用

第 53 條(廢棄物處理施設設置費用의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廢棄物處理施設 또는 再活用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에 대한 財政的인 지원을 할 수 있다.

第 54 條(廢棄物處理實績의 보고) ①市·道知事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管轄區域안의 廢棄物處理實績을 다음해 2月말 까지 環境處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環境處長官은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市·道知事 또는 市長, 郡守, 區廳長에게 廢棄物業務에 관련된 指導, 團束 등의 實績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第 55 條(許可 등의 手數料) 第 17 條 第 1 項, 第 21 條 第 3 項 및 第 26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 56 條(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 57 條(聽聞)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 19 條 第 1 項, 第 22 條 第 1 項 및 第 26 條 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登錄의 取消나 營業의 정지를 命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 기타 利害關係人에게 意見陳述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相對方 또는 代理人 기타 利害關係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58 條(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處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한 廢棄物處理施設 등의 效率적인 管理·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總理令(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管理·운영을 할 能力이 있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 6 章 罰則

第 59 條(罰則)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 17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一般廢棄物處理業을 한 者
2. 詐偽 기타 부정한 方法으로 第 17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業 許可를 받은 者
3. 第 20 條 第 6 項 또는 第 28 條 第 6 項의 規定에 의한 閉鎖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4. 第 21 條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 施工業을 한 者
5. 詐偽 기타 부정한 方法으로 第 21 條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 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

6. 第 26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特定廢棄物處理業을 한 者
7.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 26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

第 60 條(罰則)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 13 條 第 3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一般廢棄物을 처리한 者
2. 第 17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一般廢棄物處理業의 許可事項을 변경한 者
3. 第 19 條 第 1 項 또는 第 22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期間 중에 營業을 한 者
4. 第 20 條 第 2 項 또는 第 28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5. 第 20 條 第 5 項 또는 第 28 條 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 또는 使用停止命令을 위반한 者
6. 第 21 條 第 1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 施工을 한 者
7. 第 21 條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事項을 변경한 者
8. 第 25 條 第 1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廢棄物을 처리한 者
9.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 25 條 第 4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廢棄物을 처리한 者
10. 第 25 條 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11. 第 32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12. 第 45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13. 第 47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14. 第 50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利用의 用途制限에 위반하여 土地를 이용한 者

第 61 條(罰則)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 13 條 第 3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一般廢棄物을 收集 또는 運搬한 者
2. 第 14 條 第 1 項 또는 第 42 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 14 條 第 2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一般廢棄物을 收集, 運搬 또는 처리한 者
4. 第 16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命令을 위반한 者
5. 第 17 條 第 3 項 또는 第 26 條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制限 또는 조건을 위반한 者
6. 第 20 條 第 2 項 또는 第 28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變更한 者
7. 第 20 條 第 4 項 또는 第 28 條 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施設을 유지, 管理한 者
8. 第 24 條 第 2 項, 第 27 條 또는 第 31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9.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 25 條 第 4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廢棄物을 收集 또는 運搬한 者
10. 第 26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事項을 變更한 者
11. 第 31 條 第 2 項에 規定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廢棄物을 再活用한 者
12. 第 39 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을 두지 아니한 者
13. 第 43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14. 第 43 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 檢查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者

第 62 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 59 條 내지 第 61 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 63 條(過怠料) ①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 7 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버린 者
 2. 第 15 條 第 2 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3. 第 16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4. 第 17 條 第 4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處理料金을 받은 者
 5. 第 20 條 第 3 項 또는 第 28 條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6. 第 24 條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記錄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7. 第 41 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記錄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8. 第 47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 郡守, 區廳長이 賦果, 徵收한다.
- ③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告知된 날부터 30 日 이내에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 郡守,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 3 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 郡守,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 ⑤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 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 2 條(一般廢棄物處理業 또는 產業廢棄物處理業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處理業 또는 產業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 6月 이내에 이 法에 의한 施設, 裝備, 技術能力 등 요건을 갖추어 一般廢棄物處理業 또는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해당 營業의 許可日 前日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을 계속할 수 있다.

第 3 條(特定廢棄物排出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月 이내에 그 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 4 條(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產業廢棄物處理施設은 이 法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 또는 特定廢棄物處理施設로 본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產業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年 이내에 이 法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 또는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基準에 적합하도록 당해 施設을 改修하여야 한다.

第 5 條(產業廢棄物再生利用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產業廢棄物의 再生利用申告를 한 者는 이 法에 의한 一般廢棄物 또는 特定廢棄物의 再活用申告를 한 者로 본다.

第 6 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合成樹脂廢棄物處理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 9 條 第 5 號중 “廢棄物의 처리를”을 “廢棄物의 처리와 再活用을”로 한다.

② 保健環境研究院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 5 條 第 1 項 第 3 號중 “廢棄物管理法에 의한 一般廢棄物, 產業廢棄物, 污水淨化施設, 畜產廢水淨化施設,糞尿處理施設, 쓰레기管理施設” 등 “廢棄物管理法과 污水, 畜尿 및 畜產廢水의 처리에 관한 法律에 의한 一般廢棄物, 特定廢棄物, 污水淨化施設, 畜產廢水淨化施設, 畜尿處理施設 등”으로 한다.